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 및 영화상영과 전시회 등 행사시 무료 초대권 발부 및 관람료를 감면하여 사회취약계층과 기타 소외계층의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, 각 공연에 따른 관람 입장료를 군수가 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, 대상·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.(제16조제1항)

○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 검인 생략(제16조제2항)

○ 예매수수료는 입장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결정(제16조제3항)

○ 유료관람권 발행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(제16조 제4항)

○ 자체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 수입으로 하며,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정함.(제16조 제7항)

3. 조례 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('09. 10. 29 ~ '09. 11. 19) 결과 : 해당없음

5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6. 참고사항

❍ **규제심사** : 해당사항 없음

❍ **예산관련** : 해당사항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예술회관에서 자체기획(타인과 공동으로 주최·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, 그 대상·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, 다만,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.

제16조제6항 및 제8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자체 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,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의 따라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6조(관람료 등) ①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(이하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〈개정 2007.1.9〉	제16조(관람료 등) ①군수는 예술회관에서 자체기획한 공연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“사용자”라 한다.)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대상·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②관람료는 관람권, 입장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을 발매하여 징수하되,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07.1.9〉 〈단서신설〉	②---------- 다만,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,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. 〈후단신설〉	③---------- 이 경우,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	④유료관람권 발행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
⑤(생략)	⑤(현행과 같음)
⑥예술회관의 자체공연 또는 기획공연도 위의 각 항의 규정을 따른다.	〈삭제〉
⑦(생략)	⑥(현행 제7항과 같음)
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이용에 대해 30%범위내에서 할인해택을 줄 수 있다.단, 단체는 20인 이상으로 한다.	〈삭제〉
〈신설〉	⑦자체기획 한 공연에서 징수한의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,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정한다.